

2022학년도 1학기 장학사정관 추천 학업지원장학생 선발계획

I 추진배경

- 우리 대학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나, 장학제도의 사각지대 또는 급박한 사정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된 학생을 위한 제도 필요
- 실제 가정형편이 곤란함에도 장학 관련 규정 또는 지침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장학금 혜택에서 소외된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
-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일반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 및 연구활동을 병행하고 있는 일반대학원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

II 관련근거

- 「부산대학교 장학금 규정」 제18조(장학사정관) 및 19조(사정관 자격 등)
- 「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」 제19조(학사과정 학업지원장학금)
- 「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」 제30조(대학원과정 학업지원장학금)

III 선발기준

1. 선발대상

가. 학부생

- 2022학년도 1학기 재학 중인 **정규학기 학부생** 중 가계곤란 사유를 **장학사정관이 심사하여 등록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**
 - ※ 2020학년도부터 해당 학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미확정자는 신청 불가
- ① **소득분위 9분위 이상** : 아래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
 - 보호자의 실직·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
 - 직계존속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
 - 직계 존·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**중증질환·희귀난치성질환** 등 중증의 긴급한 치료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
 - 기타 가계곤란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
(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지원 받지 못하여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포함)

- ② 소득분위 0~8분위 : 성적탈락(2.51 미만자) 등으로 등록금 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(위 ①항의 가계곤란 사유 적용)
- ③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최대 지원 가능 횟수 초과자 :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였으나 최대 지원 가능 횟수를 초과하여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 학생 중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(위 ①항의 가계곤란 사유 적용)

나. 일반대학원생

○ 2022학년도 1학기 재학 중인 정규학기 일반대학원생 중 가계곤란 사유를 장학사정관이 심사하여 등록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

- ①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
- ② 2022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(가구원 전원 포함)이 아래 기준 이하인 자
(단위: 원)

구 분	1인가구	2인가구	3인가구	4인가구	5인가구	6인가구
기준 중위소득*의 60%(A)	1,166,887	1,956,051	2,516,821	3,072,648	3,614,709	4,144,202
보험료(A×0.03495)	40,783	68,364	87,963	107,390	126,335	144,840

*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211호(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·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)
 ※ '가구'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개별가구를 말함.

- ③ 위 조건(①, ②)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아래의 가계곤란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
 - 보호자의 실직·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
 - 직계존속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
 - 직계 존·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질환·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의 긴급한 치료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
 - 기타 가계곤란정도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
(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지원 받지 못하여 학생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포함)

2. 선발기준 및 장학금액

○ 가계곤란 정도, 성적, 지원 횟수, 학생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
- 성적기준

(학부) 직전학기 평점평균 2.0 이상, 이수학점 12학점 이상

※ 심사 학기가 마지막 정규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이수학점 1학점 이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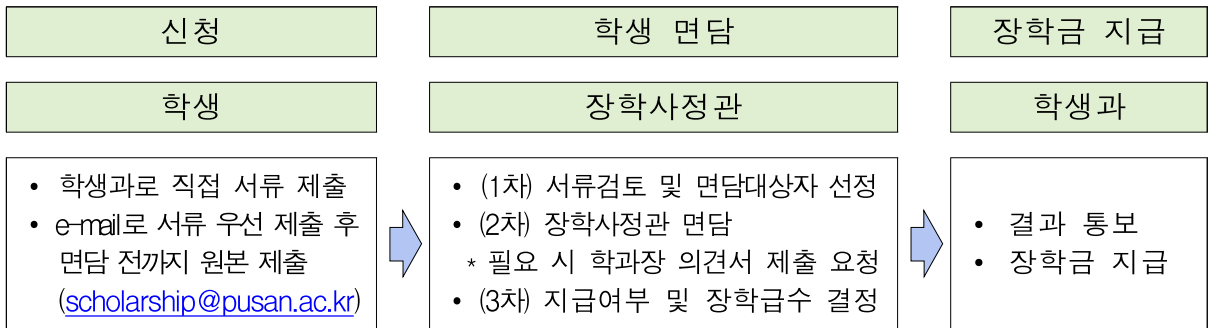
(일반대학원) 직전학기 평점평균 3.0 이상

○ 가계곤란 정도(상·중·하)에 따라 차등 금액 지급(등록금에 한함)

결과	장학금액	비 고
상	A급(등록금 전액)	가계곤란 정도,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등급 결정
중	B급 ~ C2급(수업료2)	
하	D급(수업료1) 이하	

IV 선발절차 및 추진일정

1. 선발절차



2.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

- (기본서류) 장학금 신청서,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*,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
 - * 가족관계증명서는 부(父) 또는 모(母)를 기준으로 발급
 - ※ 선발 진행 과정에서 필요 시 학과장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음
- (제출서류) 아래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서류(중복 가능)
 - 학부생

가계곤란 해당 사유	증빙서류
보호자의 실직·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실직)고용보험수급자격증, 구직등록필증 • (파산)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(결정문) • (개인회생)변제수행 납입증명원, 결정문
직계존속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애인 증명서
직계존·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질환·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의 긴급한 치료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진단서, 의료비 영수증
기타 추가적인 가계곤란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타 공공기관에 의해 경제적 곤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

- 일반대학원생

가계곤란 해당 사유	증빙서류
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	•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차상위계층 확인서
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	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(가구원 전원) •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(통보)서 - 가구원 전원이 확인되어야 함 • 주민등록등본
보호자의 실직·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	• (실직)고용보험수급자격증, 구직등록필증 • (파산)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(결정문) • (개인회생)변제수행 납입증명원, 결정문
직계존속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	• 장애인 증명서
직계존·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중증질환·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의 긴급한 치료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	• 진단서, 의료비 영수증
기타 추가적인 가계곤란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	• 기타 공공기관에 의해 경제적 곤란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

3. 향후 추진일정

-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: 2022. 4. 13.(수) ~ 5. 12.(목)
- 신청서류 검토 및 면담 : 2022. 5. 13.(금) ~ 5. 27.(금)
- 장학생 결정 및 통보 : 2022. 5. 31.(화) 예정